

의안번호	제171호
의결연월일	2022. 12. 02.

#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1월 14일, 서승필 의원 외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2022년 12월 0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이태모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을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논산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현행화 (안 제3조)

구분	기간	금액	비고
개정전	2020년~2022년	1,758,770원	
개정후	2023년~2026년	2,042,700원	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